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환경부 (녹색전환정책과)
연 월 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 (안 제3조)

나.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00.00.~00.00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제3조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환경계획(이하 “시·도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이 법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을 포함하는 시·도 환경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하는 시·도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·도 환경계획과의 관계
2. 시·도 환경계획의 기본원칙과 수립절차
3. 시·도 환경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
4. 그 밖에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4조(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시·군·구(자치구의 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환경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군·구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승인된 시·도 환경계획에 부합하도록 시·군·구 환경계획

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하는 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
1. 시·도 환경계획과 시·군·구 환경계획과의 관계
2.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기본원칙과 수립절차
3. 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
4. 그 밖에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(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환경계획(이하 “시·도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이 법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·도 환경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하는 시·도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·도 환경계획과의 관계</u> <u>2. 시·도 환경계획의 기본원칙과 수립절차</u> <u>3. 시·도 환경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</u> <u>4. 그 밖에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u>

<신 설>

제3조 (생 략)

제4조(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

기준 및 작성 방법 등) ① 환경부 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시·군·구(자치구의 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환경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군·구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승인된 시·도 환경계획에 부합하도록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하는 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
1. 시·도 환경계획과 시·군·구 환경계획과의 관계
2.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기본 원칙과 수립절차
3. 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
4. 그 밖에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5조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692